

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 청 북 도 의 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**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
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계획의 수립, 창업 및 육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보장하여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
-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신설(안 제3조)
- 매년 수립·시행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세부 내용들을 명시함(안 제4조)
-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5조)
-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 된 창업 및 육성 지원 사업 신설(안 제6조)
-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도내 중소농, 고령농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, 지역공동체가 단합하도록 역량을 키워주며,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증가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
- 도내 농촌융복합산업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·농촌 육성에 기여하고 있음
-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계획 수립 사항, 창업 및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보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

[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]

-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수, 매출액

구분	계	'21년	'20년	'19년	'18년	'17년	'16년 이전
인증업체수	131	3	17	17	19	12	63
매출액(백만원)	4,569	-	1,373	1,311	929	802	154

※ 전국 인증사업자 : 1,924개소

- 시군별 현황

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131	32	14	9	13	6	18	2	9	10	11	7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괄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	<u>제1조(목적)</u> ↳ 근거법 명시
제2조(정의)	<u>제2조(정의)</u>

현행	개정안
	↳ 상위법에 맞춰 내용 수정 충북지역 농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적 제한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→ 개정 제4조	<u>제3조(도지사의 책무)</u> ▶ 신설 ↳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
제4조(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) → 개정 제5조	<u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</u> ↳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사항 구체적 명시
제5조(판로지원) → 개정 제8조	<u>제5조(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)</u> ↳ 지원센터 수행 사업 구체적 명시
제6조(공동사업지원) → 개정 제7조	<u>제6조(창업 및 육성 지원)</u> ▶ 신설 ↳ 창업·육성 지원 내용
제7조(연구·개발지원) → 개정 제9조	<u>제7조(공동사업 지원)</u> ↳ 내용정비
제8조(용자) ▶ 삭제 ↳ 제6조(창업 및 육성지원)사업에 근거 명시	<u>제8조(판로지원)</u> ↳ 내용정비
제9조(전문교육) → 개정 제10조	<u>제9조(연구·개발)</u> ↳ 내용정비
제10조(시행규칙) → 개정 제11조	제10조(전문교육) 제11조(시행규칙)
부칙	부칙

- 안 제3조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신설(안 제3조)
- 안 제4조는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매년 수립·시행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

-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**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**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
 - 도는 지난 2015. 3월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,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, 기획판매전, 안테나숍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
 - 지원센터 지정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, 지원센터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[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수행업무]

- ①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,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
- 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
- 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, 연수,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
- ④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·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
- ⑤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
- ⑥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[충북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현황]

- 운영기관 : 충북연구원(충북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)
- 지정기간 : '21. 1월 ~ '23. 12월 * 최초지정 : '15. 3월
- 근무인원 : 6명

구분	계	'20년	'19년	'18년	'17년	'16년 이전
현장코칭(건)	915	245	205	194	156	115
안테나숍(개소)	5	5	4	4	3	2

- **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 된 창업 및 육성 지원 사업 신설(안 제6조)**
 - 농업인 등에게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, 경영전략·마케팅 상담,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설에 관한 지원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
- **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**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농촌융복합산업(6차 산업)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(1차 산업), 특산품 제조가공(2차 산업) 및 유통·판매, 문화 체험 관광, 서비스(3차 산업)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,
-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, 도농 소득 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의 위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촌의 새 활로가 되고 있음
- 본 조례 개정으로 창업 및 체계적인 육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
-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